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2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을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안 제8조).

나.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가 사회혁신 담당관에서 전환도시담당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촉진 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사회혁신담당관에서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3. 5.~3. 25.)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사회혁신담당관”을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p> <p>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③ (생략)</p>	<p>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 ⑤ (생략)</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사회혁신담당관</u>이 된다.</p>	<p>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u>----- -----.</p>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전환도시담당관 장준호(☎ 2133-7993)